

제 179회 거창군의회  
〈제 2차 정례회〉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 창 군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1 -
----------	--------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안 자 : 거창군수

## ① 자생의원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거창 근대병원의 효시이자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근대 의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자생의원 부지를 매입하여 근대문화유산 등록 및 의료박물관, 근세 역사 전시관 활용 등 의료·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다양한 문화예술과 연결하여 군민의 문화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029,676			
취득	토지	소 계		962	962,000	2012	자생의원에 대한 의료 문화 자산 보존	이영희외2명
		거창읍 중앙리 240	대	17	17,000			
		거창읍 중앙리 240-1	대	33	33,000			
		거창읍 중앙리 283-6	대	734	734,000			
		거창읍 중앙리 284-2	대	69	69,000			
		거창읍 중앙리 285-1	대	99	99,000			
		거창읍 중앙리 283-9	대	10	10,000			
	건물	소 계		446.28	67,676			
	거창읍 중앙리 283-6	대	446.28	67,676			정원조외1명	
							성수현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지적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 ② 거창월성 창의 우주체험관 건립

### 1. 제안이유

- 우주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채울수 있는 과학교육의 토대마련
- 체험관광 중심점 구축과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

### 2. 취득재산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유사	재산소유자
		소재지	면적				
계		건물 1동	750	3,000,000			
취득	건물 (과학관)	북상면 월성리 1608	750	1,350,000	2012	창의 우주 체험과학관 건립	거창군
	우주체험 전시시설	"		1,650,000			

#### < 월성 창의우주체험과학관 신축(예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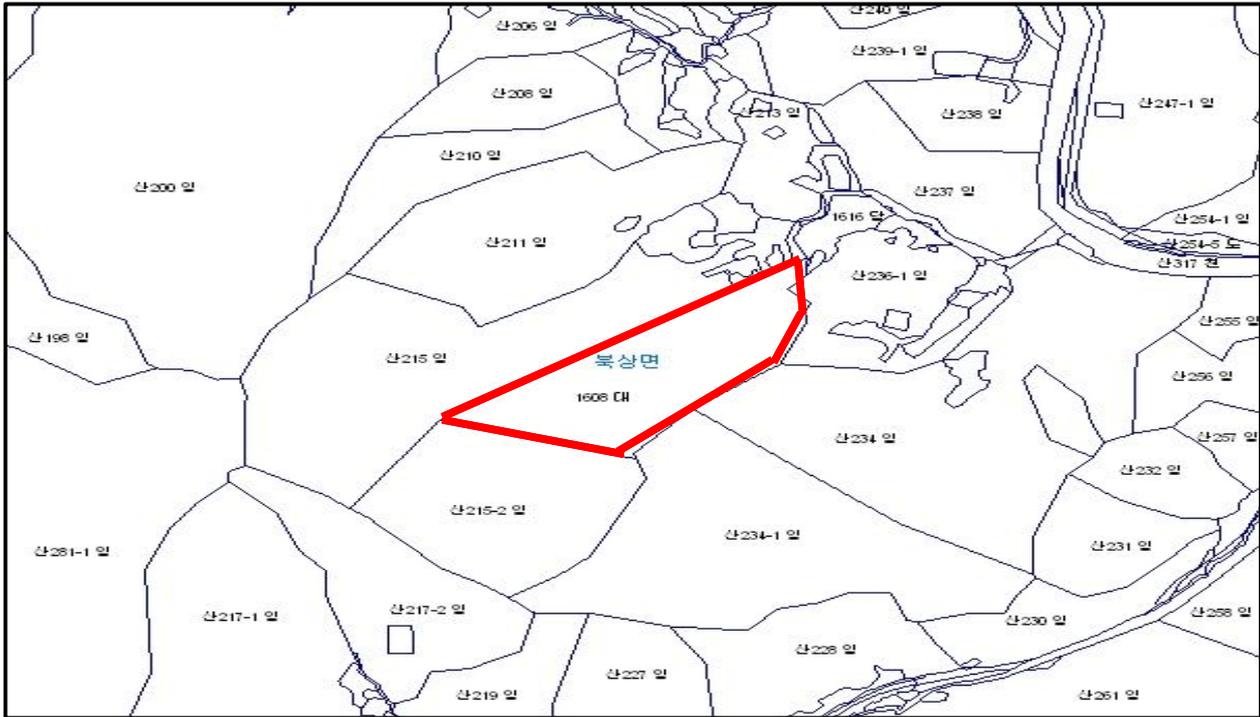
- 예정지 : 북상면 월성리 1608(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규모 : 과학관 1동 750㎡(지상 3층)
- 주요시설
  - 체험전시시설 : 가변중력체험장치, 무한회전체험장치, 우주체중계 등
  - 관측장비 : 원형돔, 주망원경, 보조망원경, 천체투영기 등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지적도 및 위치도 ⇨ “따로 붙임”

## 지적도



## 위치도



### ③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

#### 1. 제안이유

- 2012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건물이 벽면균열 및 노후화로 건물의 신축이 시급함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818,901				
취득	토지	소 계		12,098	522,661	2012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최영석 이진형 " 최준학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82-2	답	1,615	89,148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82-3	답	4,745	261,92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82-4	답	1,724	95,16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82-5	답	400	22,080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82-6	답	590	32,568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497-5	답	1,768	12,835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13-1	전	1,256	8,942				
	건물	소 계		2,652	4,296,240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2-2외 4필지		2,200	3,564,000			보건소 신축	거창군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497-5		336	544,320			가북보건지소 신축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13-1		116	187,920			임불보건진료소 신축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지적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2-2번지 외 4필지, 9,074 m<sup>2</sup>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가북면 오혜리 1497-5 , 답, 1,768 m<sup>2</sup>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